

농약관리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었나

저독성 농약 추가 독성구분 4단계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등 세부사항 규정

지난해 12월 농약관리법의 개정공포에 이어 농약관리법 시행령이 10월 7일 개정공포됐다. 이 시행령에서는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농약의 품목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을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부설연구소나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등으로 정하고,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을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등록하는 품목, 최초 등록후 15년이 경과한 품목 등으로 하였다.

또한 ▲등록된 농약의 품목에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경우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권으로 약해 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농약관리위원회를 농약안전관리에 관한 자문기구인 농약안전성심의회로 개편하였다.

한편 ▲현행 맹독성·고독성·보통독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농약의 독성 구분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과 일치시키는 한편 저독성 농약의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독성을 추가하여 4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 시행령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농약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립식물검역기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라 함은 국립식물검역소(이하 “식물검역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방제업의 영업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식물방제업·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 : 수출입식물검역과정에서 행하는 방제업
2. 일반방제업 : 국내에서 재배 또는 생육중이거나 유통중인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방제업
3. 항공방제업 : 국내에서 재배 또는 생육중이거나 유통중인 농작물에 대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제업

제4조(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 가.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 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 다.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라.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관
2.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하되, 그 지정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조 점

제6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 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국제기구등에 의하여 당해품목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로 재등록하는 품목
2. 최초등록(동일품목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 15년이 경과된 품목
3.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동일품목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시험성적서를 말한다)의 사용동의를 있는 품목
4. 국제적으로 잔류성에 관한 시험의 생략이 인정되는 품목
5.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농작물(사료용 농작물과 담배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품목

제7조(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제8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변경관련 약해시험등)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품목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약해 또는 적용병해충의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식물검역소장 또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은 수출입식물이나 재배면적이 적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의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병해충 범위등에 관한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원제)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화학적 분석 및 독성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원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제로 한다.

1. 최초등록(동일원제에 관하여 최초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행하여진 최초등록을 말한다)후 15년이 경과된 품목의 원제
2. 기등록자의 서류(동일원제에 관하여 기등록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서류를 말한다)의 사용동의를 있는 원제

농약관리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었나

제10조(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 농약의 수입절차) 농촌진흥청장은 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수입농약 또는 원제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의하여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설치) 농약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약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약의 안전사용 및 취급제한에 관한 사항
3. 농약안전성시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촌진흥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1. 농림부·환경부·보건복지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농약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인이내
3. 농약의 제조업자·사용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3인이내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초 점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진흥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대상농작물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적용대상병해충에 한하여 사용할 것
3. 사용시기를 지켜 사용할 것
4. 적용대상농작물에 대한 재배기간중의 사용가능횟수내에서 사용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목별로 적용대상농작물 및 병해충, 사용시기 또는 사용가능횟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0조(농약의 취급제한기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약은 식료품·사료·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고독성농약은 사용대상자외의 자가 사용하지 말 것
4.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어독성·수질오염성농약은 사용제한지역에서 사용하지 말 것
5. 기타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농약의 품목별로 혼적금지대상물건, 공급대상자, 사용대상자, 사용제한지역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약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었나

제21조(청문절차) ①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식물검역소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임한다.

1. 국내제조품목등록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8조 내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제조품목의 등록, 품목등록신청서류등의 검토등과 품목등록증의 교부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등록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다.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등과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제의 등록에 관한 권한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약등의 등록에 관한 권한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농약의 검사등에 관한 권한

5.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권한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에 관한 권한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중 품목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등록을 취소할 때 실시하는 청문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폐업·휴업 또는 영업재개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하는 제조업자·원제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조 점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에 관련된 표시사항의 색상 및 배열순서등 표기형식 권장기준안의 연구 및 작성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광고에 관련된 표준광고용어권장안의 작성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고시를 하기 위하여 실시중 이거나 실시한 시험은 제5조의 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한 시험으로 본다.
- ③(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대상품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품목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1998년 12월 6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제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청품목의 시험성적서(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목고시를 위한 시험에 농약관리기금이 사용된 경우의 시험성적서에 한한다)제출을 면제한다.

[별표]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농약의 구분(제20조 제3항 관련)

1. 독성에 의한 농약의 구분

가.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구 분	반수치사량(mg/kg체중)			
	급성경구		급성경피	
	고 체	액 체	고 체	액 체
맹독성	5미만	20미만	10미만	40미만
고독성	5이상	20이상	10이상	40이상
	50미만	200미만	100미만	400미만
보통독성	50이상	200이상	100이상	400이상
	500미만	2000미만	1000미만	4000미만
저독성	500이상	2000이상	1000이상	4000이상

- 비고 : 1. 농약의 독성구분은 제품농약의 반수치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고체 및 액체의 분류는 농약품목의 물리적 상태에 의한다.

농약관리법 시행령 어떻게 바뀌었나

나. 어독성정도에 따른 농약의 구분

구 분	반수치사농도(ppm, 48시간)
I 급	0.5미만
II 급	0.5이상~2미만
III 급	2이상

비고 : 1. 농약의 어독성구분은 제표농약의 잉어에 대한 반수치사농도(유효성분)를 기준으로 하되, 비제배용농약인 경우에는 잉어외의 다른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II 급 또는 III 급에 속하는 농약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연간사용량이 많아 10아르당 평균사용량이 유효성분으로 0.1kg을 초과하고, 잉어에 대한 반수치사농도(ppm)를 10아르당 농약사용량에 대한 유효성분량(kg)으로 나눈 값이 5미만인 농약은 I 급으로 한다.

2. 잔류성에 의한 농약의 구분

가. 작물잔류성농약

농약의 성분이 수확물중에서 잔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농약

나. 토양잔류성농약

토양중 농약의 반감기간이 180일이상인 농약으로서 사용결과 농약을 사용하는 토양(경지를 말한다)에 그 성분이 잔류되어 후작물에 잔류되는 농약

다. 수질오염성농약

수서생물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을 오염시켜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농약